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 2024년 3월 18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시행
- 대상대출 확대 :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1년 확대)
혜택 강화 : 1년간 금리 $\Delta 0.5\%p$ 인하, 보증료 $\Delta 0.7\%p$ 면제

1. 추진경과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하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등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두 차례 제도개편도 시행하였다. '23.3.13일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였으며, '23.8.31일에는 사업용으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4.3.11일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천건(금액 : 약 1.3조원)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개인사업자 등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4.42%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그러나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권이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제도개편 내용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 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Delta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Delta 1.2\%p$ 추가로 경감한다.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3.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 2억원, 개인사업자 :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24.3.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Delta 1.2\%p$ 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 대출은 제외한다.

< 대환대출 비용부담 추가경감 소급지원 여부 >

	~'23.12.20. 대환	'23.12.21.~'24.3.17. 대환
법인소기업	○	○
개인사업자	X	○

※ '24.3.11일 이후 신청한 대환대출은 강화된 혜택으로 '24.3.18일부터 대환될 예정

최대 $\Delta 0.5\%p$ 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하여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 $\Delta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24.12.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

* 개편방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대출은 '24.3.18.부터 조회 가능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다만,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 불가)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 (붙임) 1. 주요 QA
- 2.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3.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가계신용대출)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 >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SC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 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담당 부서 <총괄>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남동우 (02-2100-2630)
		담당자	사무관	허 성 (02-2100-2632)
<공동>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책임자	부 장	정현호 (053-430-4331)
		담당자	팀 장	전상목 (053-430-4335)
<공동>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	책임자	부 장	박영상 (02-3705-5290)
		담당자	팀 장	배진호 (02-3705-5709)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①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②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③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1.1~'23.5.31.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

3. 대환 대상대출 확대에 따라 이용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되며,
 -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되었다면,
 -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함

4. 대환 대상대출 확대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만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붙임3)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하였음

* 예) 사업용도지출금액이 1,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A은행과 B은행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고 총 2,000만원을 대환

5.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 '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4.12.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붙임2

소상공인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주요내용 [24.3.18.]

구 분	현행	개편
공 급 규 모	▸ 9.5조원	▸ 좌동
신 청 대 상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좌동
대 상 채 무	대상기관 ▸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좌동
	금리요건	▸ 7% 이상 고금리대출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가계신용대출
	시기요건	▸ (사업자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가계신용대출) '20.1.1일~'22.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대한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15개社) - 단,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 좌동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좌동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 좌동
보 증 비 율	▸ 90%	▸ 좌동
보 증 료 율	▸ 1~3년 0.7%, 4~10년 1.0% / 연납 (일시납 시 15% 할인)	▸ <u>1년 면제</u> , 2~3년 0.7%, 4~10년 1.0% / 연납(일시납 시 15% 할인)
만 기 구 조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좌동
금리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 + 2.0%p 이내	▸ <u>(1년차) 최대 5.0%</u> ▸ (2년차) 최대 5.5% ▸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 + 2.0%p 이내
금 리 구 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운 용 기 한	▸ '24.12월	▸ 좌동

□ (사업용도지출금액)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①매입금액, ②소득지급액, ③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①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 (확인기간)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 「차입일+1년」 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 반기: 일반과세자, 연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예 시 >

- ① 일반과세자가 '20.5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이상 3개 반기)의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 ②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21.10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 '21년도, '22년도(이상 2개년도)의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②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 (확인기간)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 매월 신고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 예 시 >

-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 신고 시('21.2월 차입)
- '21.2월 ~ '22.1월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별 신고 시('22.4월 차입)
- '22년 상반기 ~ '22년 하반기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③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곤란 시,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①사업용도지출금액, ②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 예 시 >

- ① ①매입금액 5천만원, ②소득지급액 3천만원, ③임차료 2천만원인 경우
- ① ~ ③ 중 택 1하여 제출 가능(2천만원 이상 증빙)
- ② ①매입금액 1천5백만원, ②소득지급액 없음, ③임차료 1천만원인 경우
- ①, ③ 서류 제출 필요